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세수우대와 그 부작용

1. 기업소득세법 초안: 내자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 통합

- 현재 중국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소득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기업소득세법이 제정되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동일한 소득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 내자기업에 대해서는 1993년 11월 국무원을 통과한 “기업소득세잠정조례(企业所得税暂行条例)”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1991년 4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外商投资企业和外国企业所得税法)”을 적용하고 있음.
-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상이한 소득세 제도로 인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 세수부담의 차이가 비교적 크고 내자기업의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에 불리하기 때문에 통일된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됨.
-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법(企业所得税法)”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이후 2007년 3월 전인대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한편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해 ‘两免三减半’으로 대표되는 세수우대정책 이외에도 내자기업과 다른 과세소득 공제항목의 적용을 통해 많은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표 1> 현행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과세소득 공제항목 비교

	내 자 기 업	외 자 기 업
고정자산	잔존가치 5% 이내	잔존가치 10% 이내
대손충당금	연말 미수금잔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음	신용, 리스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은 매년 매출 채권 혹은 연말 미수금 잔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공익구조성기부	금융보험업은 당해 연도 과세소득액의 3% 범위 내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	국가가 정한 조직·기구가 사회공익사업과 수재 지역·빈곤지역에 제공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
임금 및 비용	임금급료의 지출 : 법정 세금계산 임금기준 내 (1인당 매월 800위안)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공제 직원복지비·노조경비·교육경비는 각각 임금총액의 14%, 2%, 1.5%를 공제	임금과 복지비 지출: 그 지불기준과 부속서류에 대해 현지세무기관의 심의동의를 얻으면 전액 공제
약성부채 손실	3년을 초과하여 회수되지 않은 미수금	이미 2년을 초과하여 여전히 회수불능인 것
업무추진비	해당연도 운영업수입 1500만 위안과 1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해당연도 운영업수입의 0.5%와 0.3%내에서 사실에 근거해 공제	(1) 운영업수입액에 따른 계산은 내자기업과 동일 (2) 해당연도 수입 500만 위안 이하와 초과부분에 대해 해당연도 영업수입 총액의 1%와 0.5% 내에서 공제
광고비	연간 운영업수입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전액 공제
업무선전비	연간 운영업수입의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전액 공제
투자수익	경제특구 등지 세율지역(15% 또는 24%의 세율)에서의 설립으로부터 회수된 이윤에 대해 법정세율과 실제세율 간의 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추가징수	중국 내에서 기타 기업소득의 이윤(주식배당금)에서 투자한 부분은 과세소득액에서 제외

자료: 21世纪经济报道(6. 19)

2.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정책의 문제점

가. 외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비용 지불

□ 소득세 우대정책의 실시로 외자기업의 직접투자가 활발해진 반면, 외자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실제 지불한 대기는 훨씬 크다는 평가가 제기됨.

- 중앙 및 각 지방정부는 지역과 산업적 특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관세, 도시유지건설세 등에서 세수환급 혹은 우대정책을 실시함.
- 그 결과 외자기업에게 제공된 공장용지의 가격은 내자기업의 가격은 물론 시장가격보다도 낮아 지방정부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 뿐만 아니라 토지수익에 대해서도 손실을 입음.
-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용수와 전력 및 일부 사회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특혜정책을 실시하였음.
- 외자기업은 세수우대정책 특히 ‘양면삼감반(两免三减半)’¹⁾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부거래와 새로운 기업의 설립을 통해 조세를 회피해 왔음

나. 조세회피로 인한 세원의 유실 초래

□ 외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로 국가세원의 장기적인 유실을 초래한 바,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한 관계자는 외자기업이 각종 수단을 통해 탈세한 금액이 매년 300억 위안을 초과하며, 그 주요한 수단은 이전가격의 조작이라고 밝힌 바 있음²⁾.

다. 내자기업의 성장 지연

□ 중국의 외자중시정책은 내자기업의 발전 잠재력에 손상을 주었고, 내자기업의 외자화(假외자)를 가속화시켜 자본의 해외도피에 대한 우려를 낳음.

- 내자기업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외자기업으로 탈바꿈하였고 이를 통해 각종 세수우

1)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제8조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윤발생 연도부터 제1~2차 연도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고, 제3~5차 연도에는 50%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함

2) “外資企業通過各種手段每年逃稅金額在300億以上”, 《新京報》(2006년 5월 25일자)

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었음.

라. 기타

- 이 외에도 외자에 대한 관리감독, 대외무역을 통한 이익의 편중, 외채의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외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는 많은 지방정부의 손실 보전, 환경 보호, 최저임금제를 위해 필요한 감독을 어렵게 함.
- 대외무역에서 내자기업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이 대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 여전히 대부분의 이윤을 외자기업이 차지하고 있음³⁾.
- 외자기업이 누리는 혜택을 얻기 위해 중국기업이 외국을 경유하여 다시 중국에 투자하는 이른바 假외자의 부단한 유입과 그에 따른 외채증가는 중국의 국제수지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환율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3. 세수우대정책을 이용한 외자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가. 이전가격

- 대외무역에서 소득세 감면기간이 지난 외자기업이 수출가격은 낮게, 수입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낮게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자금의 해외도피의 수단이 됨과 동시에 국가의 세수 유실을 초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상대국과 덤핑으로 인한 무역마찰을 초래하는 구실로도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3)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도 대외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은 58%였으며 무역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4억 달러로 83%를 기록했다며, 외자기업의 비중을 빼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75억 달러에 불과해 대부분의 이윤을 외자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산둥(山東)의 한 외자 제약회사는 국외 모기업의 직접적인 가격결정방식을 통해 수출상품의 단가를 국내 동종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0위안 낮게 책정하여 이윤을 국외로 이전시킨 바 있음.
- 서비스무역에서는 외자기업이 컨설팅비 및 기술특허비의 이전지출을 통해 국내 혹은 국외소재의 계열기업에게 이윤을 이전시키는 사례도 있음.
- 허베이(河北)의 한 외자 도자기회사의 경우 홍콩의 모기업과 매년 판매수입의 32%를 컨설팅비로 지불하기로 협정하고 2005년 이윤의 3배에 해당하는 804억 달러의 컨설팅비를 지불하였음.
- 셴젠(深圳)의 한 외자 석유화학회사는 2003~2005년 동안 국외소재 계열기업에게 기술이전비, 서비스비, 상표 라이선스비로 총 관리비용의 56.3%에 해당하는 1억 6천만 위안을 지불한 바 있음.

나. 기존 외자기업의 새로운 외자기업 설립

- 기존의 외자기업이 ‘兩免三減半’의 정책을 이용하여 새로운 외자기업을 설립한 이후 新舊외자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해 舊외자기업은 손실을 보도록 하고 新외자기업은 이윤을 얻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음.
- 대만자본의 한 식품회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新외자기업을 설립하였는데 이 기업들은 설립 후 2년간의 이윤은 대단히 크지만 50% 감면기간동안의 이윤은 뚜렷하게 하락하였고 감면기간 만료 후에는 적자상태로 전환됨.
- 칭다오(靑島)의 한국자본의 한 제화회사는 국외소재 모기업에 대한 수출입가격 조정과 新외자기업의 舊외자기업으로의 비용전가 등의 방법을 통해 조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음.
- 이를 통해 新외자기업의 순자산수익률은 세수감면기간동안에 75%에 달했고 舊외자기

업은 지속적인 적자를 보였음.

다. 국내기업의 외자기업화(假외자)

- 가장 보편화된 假외자의 유형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역외금융센터에 명목회사(shell company)를 등록한 후 외자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경우임.
- 외자기업에 대해 低세제를 실시하는 홍콩, 버진제도, 카이만제도, 사모아제도, 버뮤다제도 등이 대표적인 조세회피형의 역외금융센터임.
-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버진제도, 카이만제도, 사모아제도는 2005년 기준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규모에서 각각 2, 8, 10위를 차지(실제이용액 기준)하고 있음⁴⁾.
- 假외자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상무부 부설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박사는 2004년 640.7억 달러(실제이용액 기준)의 외자유입액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200여억 달러를 假외자로 추정하 바 있음⁵⁾

라. 외자기업 적자의 배경

- 외자기업 중 소수의 기업만이 높은 이윤율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외자기업은 상당 기간 동안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도산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자가 커질수록 투자를 확대시키는 경우도 있음.
- 이는 국외의 모기업 혹은 국내 계열기업의 높은 이윤이 적자를 보전하고 재투자에 따른 특혜를 받기 위해 많은 외자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데에 기인함.
- 외자기업은 조세감면기간이 끝난 이후 이윤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외자기업을 설

4) 중국 상무부 외자사(外資司)의 외자통계(<http://www.fdi.gov.cn>) 참조

5) “我國引進外資中三成是國內資本”, 《經濟參考報》(2005년 8월 23일자)

립하고 있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손실 및 투자규모가 커지는 주요한 원인임.

- 저장(浙江)의 한 외자기업의 경우 연속 8년간 적자를 보였고 이미 누적적자가 자본금을 초과하였지만 모기업은 오히려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증가시킨 바 있음.

- 앞에서 예를 든 선전(深圳)의 한 외자 석유화학기업 역시 계열 기업과의 서비스무역으로 적자상태이지만 그 투자규모는 마찬가지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도 저장성(浙江省) 외국인투자기업연합의 연간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가한 16,000개 기업 중 순자산수익률이 50% 이상인 고이윤기업은 399개 기업으로 2.5%를 차지함.

- 이들의 당해 연도 총 순이익은 8억 6,400만 달러로 조사기업 전체이윤의 20.8%를 차지하였으며, 399개의 고이윤기업 가운데 338개의 기업(87.2%)이 ‘两免三减半’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밝혀짐.

<참고 자료>

《中国经济时报》, “内外资企业所得税改革问题与对策”, 2006. 7. 19

《21世纪经济报道》, “外资税收漏洞”, 2006. 6. 19

《新京报》, “外资企业通过各种手段每年逃税金额在300亿以上”, 2006. 5. 25

《法制日报》, “统一的企业所得税法草案已形成”, 2005. 11. 4

《经济参考报》, “我国引进外资中三成是国内资本”, 2005. 8. 23